

第 25 回 達西區議會 (臨時會)

内務委員會會議錄 (附録)

第 1 號

大邱直轄市達西區議會事務課

目 次

- 1. 大邱直轄市達西區國際化推進協議會設置條例(案) 22 面
- 2. 大邱直轄市達西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(案) 26 面
- 3. 大邱直轄市達西區靑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(案) 31 面

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 (안)

의 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'94. 5

제 출 자 : 달 서 구 청 장
(기획감사실장)

1. 제안이유

- 국제화, 개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
- 국제적 감각이 높고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「국제화추진협의회」를 구성 운영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목 적 - (안 제1조)

-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업무를 균형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·관·산·학 협의체를 구성,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,

- 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조정하기 위하여 국제화 추진협의회의 설치·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□ 기 능 - (안 제2조)

-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
-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 발굴
-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선정 및 추진 지원
-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 사업 실시
-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 등

□ 협의회 구성 - (안 제3조)

- 회장,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회장과 위원은 국제화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

□ 운 영

- 회의 : 정기회-매분기 1회 소집, 필요시 임시회소집(안 제6조)
-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(안 제6조)
-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(안 제8조)
-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등의 요청과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(안 제9조 및 안 제10조)

□ 수당 및 운영세칙

- 협의회 위원과 공청회, 세미나 등에서 주제발표, 토론 등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,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지급(안 제11조)
- 조례규정사항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음(안 제12조)

3. 관련근거

-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준칙(내무부)

4. 제정조례(안) : 따로 붙임

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 (안)

제 1조 (목적) 이 조례는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·관·산·학 협의체를 구성,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 2조 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
2.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
3.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
4. 지역주재 외국기관·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
5.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
6.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

제 3조 (구성) ① 협의회는 회장,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회장과 위원은 국제적 감각이 높고 이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제 4조 (임기) ① 회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유관기관, 민간단체의 장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체장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,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.

제 5조 (회장의 직무)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.

②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6조 (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
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
제 7조 (소위원회) ① 협의회는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우너회를 들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제 8조 (협의조정사항의 처리)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 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9조 (자료의 제출등)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,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,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에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10조 (공청회등 개최)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·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제 11조 (수당등)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, 세미나등에서 주제발표·토론등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, 여비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12조 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